

사회적 배제 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송 다 영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임강사)

[요 약]

본 연구는 저소득 모자가구주의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노동빈민(working poor)으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비롯되었으며, 저소득모자가구의 생활실태를 최근 사회과학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의 극복방안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연대모색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한 일반가구, 일반 모자가구, 사회적 빈곤선 이하에 놓인 저소득모자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구유형별 특성과 생활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모자가구의 사회적 배제과정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2000년 지역사회복지협의회회의 「사회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차분석(secondary analysis) 하였으며 총 3,182가구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모자가구는 일반모자가구, 저소득모자가구에 상관없이 고용형태, 주거형태, 소득, 소비생활 측면에서 일반(남성가장)가구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반가구에 비해 모자가구는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제공받기보다는 오히려 장애, 만성질환 등의 가족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모자가구는 전반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자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해지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을 반영하며, 현재 공식적으로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일반모자가구도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향후 저소득층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모자가족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방안이 모색되었다.

주제어 : 모자가족, 사회적 배제, 빈곤, 가족해체, 여성가구주, 사회적 안전망

* 본 연구는 2002년도 호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본 논문은 2003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문제제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말 IMF 경제위기이후 가속화된 빈곤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한 핵심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수급자격기준이 향상되었고 보호를 넘어 수급권리로서 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사활'로 명칭되는 노동연계형 복지정책(welfare) 방향성 제시에 있다. 최근 들어 자활사업에 대한 실태나 사업효과 분석에 관한 수많은 연구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방향성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김수현, 2001; 박경숙·박능후, 2001; 이숙진·정성아, 2001).

노동연계형 복지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내 하나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살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구주를 위한 복지급여 프로그램(AFDC) 안에 적극적인 노동연계를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을 조건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한다는 공공부조정책의 방향성은 1970년대 초반 닉슨 정부를 출발로 하여 레이건 정부, 클린턴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다양한 방식의 노동유인프로그램(예를 들면 Family Assistance Program, Work Incentive New, AFDC-UP 등)과 결합되어 지속되어 왔으나, 이와 같은 정책적 방향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사는 모자가구는 대부분 노동시장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하며 상대적으로 가난에 빠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자녀를 혼자 데리고 사는 모자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들은 여전히 절대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굳이 절대적인 빈곤계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모자가구의 53%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상태로 살고 있다는(Baker and Tippin, 1999) 통계치는 모자가구가 빈곤에 매우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모자가구의 빈곤문제가 단순히 인적자원의 부족이나 의지력 결핍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구조적 현실과 맥이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복지급여를 받고 쉽게 혼인관계를 파기하거나 혼외 아동을 낳으며, 일을 하려는 의사도 낮고, 의지력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복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복지어머니(welfare mother)가 된다는 미국 보수주의 진영의 주장과는 달리(Murray, 1984), 이들 저소득 모자가구주는 어린 시절부터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이혼 전에도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들에게 가족구조의 변화 자체가 복지의존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Praser and Gorden, 1994; Northrop, 1990; Amott, 1990). 미국 빈곤가구의 증가, 특히 흑인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수급이 경제적 불황이자 고용구조 변동 시기였던 1980년대 이후 급증하게 된 구조적인 요인은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새로이 나타난 고용형태에 적응할 수 없었던

흑인남성의 고실업과 흑인 전반의 정치·사회적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윌슨(Wilson, 1987)의 연구 결과는 저소득모자가구 빈곤문제가 사회구조 전반의 상황 속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소득모자가구의 빈곤은 성별 분업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차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녀양육의 책임으로 경제활동참여에 일차적으로 제약을 받으며, 노동시장내에서는 성별직종분리, 불안정 고용, 차별임금 등으로 주변화되고, 임금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 체계내에서 취약한 계층이 되기 쉬운데, 특히 모자가구 여성가구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부가되는 취약성으로 인하여 여성노인과 함께 '빈곤의 여성화'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김영란, 1997; 정미숙, 2001; Millar, 1996; Pearce, 1978).

IMF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빈곤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고찰하던 데서 벗어나 보다 다차원적인 고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박능후, 1999; 박병현·최선미, 2001; 심창학, 2001). 그러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사업은 여전히 생계급여 지급이나 경제적 차원의 취업교육이나 취업, 창업 지원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모자가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자활사업의 확대는 이들 가족의 빈곤상황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수현, 2001). 보건복지부(2001)에 의하면 자활사업의 대상자인 조건부 수급자의 약 60%가 여성이며, 여성자활대상자 50% 이상이 모자가정 가구주이다. 따라서 사회적 빈곤의 주요 실체(substantial group)를 구성하고 있는 저소득모자가구 빈곤의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저소득층 모자가족의 상황을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통하여 새롭게 재해석해 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통합적 복지정책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는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빈곤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minority)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적용되어 왔으나(Berghman, 1995; Jordan, 1997; Paugam, 1995; Whelan and Whelan, 1995), 아직까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전반적인 모자가족의 생활실태와 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일반(남성가장)가구, 일반모자가구, 법정 저소득모자가구로 나누고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세 집단간 비교분석은 모자가구의 사회적 배제 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빈곤하거나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살고 있는 저소득모자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전체가구의 10%를 차지하는 실재적인 집단으로 등장한 모자가족이 우리 사회의 떳떳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통합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나, 근래에 들어 빈곤이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박병현 외, 2001;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회보험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범주로 간주되었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적 분질화 과정과 이의 결과로 나타난 시민권 행사의 불평등, 부족, 불완전성 등을 의미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Berghman, 1995; Jordan, 1997; Room, Lawson, and Frank, 1989). 사회적 배제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적 빈곤 논의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우선, 빈곤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발생시킨 주체에 대한 해석에 있어 기존의 빈곤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즉 경제적 빈곤 혹은 박탈(poverty or deprivation)에 관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그 원인에 있어 사회구조적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이나 사회변동론은 산업 혹은 고용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을 해당 결과의 하나의 주요 축으로 바라봄으로써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반면 사회적 배제는 용어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제라는 결과의 원인구성 중심에 사회구조를 놓음으로써 기존 빈곤논의와는 다르게 사회전체적 차원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제의 개념은 사회가 분화되고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차원에서 주류영역(mainstreaming)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차단되어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박병현 외, 2001; Berghman, 1995).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근본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으며 취업, 주거 및 기타 적절한 생활조건 등과 같은 사회의 제반 기회와 주요 결정과정으로부터 차단(배제)되는 불이익의 결과로 이해된다(Silver, 1994).

물론, 기존의 빈곤에 대한 논의가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결핍에 주목했었던 것에 비하여 사회적 배제는 경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심리적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배제의 결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과정에 이르는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즉 사회적 배제는 반드시 경제적인 조건의 박탈, 즉 실업과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 서비스, 주택이나 건강보호 등과 같은 사회전체적 차원의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Jordan, 1997; MacPherson, 1997; Silver, 1994). 일례로 어린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은 교육연수, 첫 번째 직업 선택, 향후 직업 기회 등으로 여러 단계의 인생 주기에서 다양한 차이를 발생시켜 특정 개인이 사회로 통합하는 과정에 제약을 가한다(Whelan and Whelan, 1995).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프랑스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의 과정과 원인을 분석한 포감(Paugam,

1995)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관계망의 성격에 따라 경제적 위기가 생겼을 경우 서로 다른 경로를 거치며 사회적으로 재통합하거나 혹은 사회적 복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표 1〉 참조). 고용상태별로 개인이 가족이나 친구, 친척 등과 맺고 있는 관계의 질, 즉 관계의 빈곤율(relational poverty)을 보여준 〈표 1〉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계층은 고용형태가 안정적인 계층에 비해 관계망이 건실하지 못하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실업자 2명 중 1명은 가족생활이나 지지적 관계망이 이미 약화되어 있거나 끊어져 있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사회적 배제 혹은 통합은 고용상태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없으며, 가족상황, 친구, 친척 등 지반 관계망과의 연관구조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제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경제위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직이후 생계문제로 이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빚으로 인한 도주와 가출로 인해 재취업의 기회가 단절되었던 현실에서도 나타났던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구조적 위기에 놓이면 사회적으로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고용상태별 관계 빈곤율

	지지적 가족/친지관계(A)	약한 가족/친지관계(B)	매우 약한 가족/친지관계(C)
① 매우 안정된 직종 종사자	74.2	21.6	4.2
② 안정된 직종 종사자	63.6	28.6	7.8
③ 불안정한 직종 종사자	61.5	27.5	11.0
④ 단기실업자	61.5	27.1	11.4
⑤ 장기실업자	50.7	31.8	17.5
전 체	68.0	25.0	7.0

자료 : INSEE study, 1986-1987; Paugam, 1995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하였음.

주 1) 고용상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① 향후 2년 동안 직업을 잃을 위험이 없는 안정된 상태로 고용된 사람들(stable job under threat); ② 현재 1년 이상 일하고 있으나, 향후 2년 안에 직업을 잃을 위험이 있는 상태의 사람들(stable job under threat); ③ 해당년도에 직업을 바꾸었거나 일정기간 동안 실직을 했었거나, 주기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향후 2년 안에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unstable job); ④ 현재 2년 이하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unemployed less than 2 years); ⑤ 현재 2년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unemployed more than 2 years).

주 2) 관계 상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A, 가족생활이나 지지적 관계가 강하고 잘 유지되는 경우; B, 가족생활이나 지지적 관계가 현상 유지되는 경우; C, 가족생활이나 지지적 관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

셋째,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빈곤 탈피를 넘어서는 더 확장된 형태의 권력불균형해소를 대안으로 포함한다. 조던(Jordan, 1997)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는 사회전체의 권력불균형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사회적 배제를 가능하는 기준으로 현실생활에서의 사회적 제도나 장치를 이용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제반 권력적인 특성을 주목한다. 즉 사회복지관련 서비스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참여보부

터의 제한을 받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에도 관심을 가지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방식에 있어 관계 역학을 중시한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특정개인이나 가족은 해당 상황에 처해서 고용, 주택, 건강, 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권(social rights)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주체세력화할 수 있는가는 하나의 주요관건이며, 배제를 넘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가능하게 할 동력으로서 정치적 참여의 보장정도는 또 하나의 주요한 사회적 배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박병현 외, 2001). 미국 AFDC 공공부조가 기본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지급액, 개인 사생활 침해, 과도한 수급자 낙인 등과 같은 불합리성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수급대상이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흑인여성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서도 확인된다(Amott, 1990). 이것은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세력으로서의 배제를 극복하는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2) 사회적 배제집단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족

저소득 모자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심리적 박탈감 등을 포함하여 다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저소득모자가족은 남성생계자 부양을 기본원리로 하는 사회구조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배제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집단이다. 즉 모자가족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소득의 원천이자 사회적 자원의 주요 통로를 제공했던 남성부양자를 통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혜택을 상실함과 동시에, (사적)가족지원체계의 감소, 노동시장 전반의 성차별, 이중적인 복지체계, 사회의 부정적 인식, 주택 및 의료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아동을 양육하면서 동시에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궁핍하며,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고, 주거나 의료문제에 있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를 부분별로 세분화시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가족지원체계와 배제

한국사회에서 가족내 경제적 자원의 유입은 대체로 가장으로 간주되는 남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결혼관계를 전제로 하여 남편이 사회에서 획득한 갖가지 경제적, 사회적 자원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남성생계부양자 가족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결혼관계 해체는 이제까지 가져왔던 사회적 혜택이나 경제적 자원을 잃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모자가족은 남성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이후 그동안의 계층적 지위와 생활스타일에서 상당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즉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모 등은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편재되어왔던 가족구조로 인하여 일차적으로 자원접근이 제한되거나 통로자체를 상실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빈곤을 심화시킨다. 실제 이혼이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변화에 주목한 연구들은 최소 6%에서 최대 70% 정도의 소득수준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윤홍식, 2003; Teachman and Paasch, 1994). 더욱이 이

혼이나 별거이후 남성배우자에 의한 자녀양육비 지원이 전혀 없거나 제한된 모자가구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성정현·송다영·정미숙 외, 2001), 이들 가구는 생계곤란은 물론 아동양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 투자에도 제약을 받게 되어 장기적으로 빈곤재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통적으로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돌보아왔던 대가족제도도 더 이상 사적지원체계의 지원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대가족제도는 여성들에게 억압적인 측면을 지녔지만 동시에 가족구성원으로서 보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¹⁾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대가족제도는 더 이상 가족지원체계로서 역할하지 않으며, 사별이나 이혼이후 많은 모자가구에서는 남성배우자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의 원가족과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인이 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모자가정의 사적인 지지망은 축소되며 따라서 이들을 통한 도움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상혜경·송다영·김영란·김정훈, 2001). 사별이나 이혼 이후 친정식구나 친구, 이웃이 남성 배우자나 이전 가족관계를 대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족지원체계의 절대적 보호수준은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로 귀착된다. 특히 상당수의 저소득층 모자가구는 사별이나 이혼 이전에도 이미 가난한 상태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성은 배가된다. 많은 저소득계층의 남성가구주들은 이미 오랫동안 실직한 상태이거나, 혹은 일용노동, 잡무 등과 같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해 무능한 상태에 빠지거나 이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들 저소득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형제, 자매, 친인척 등의 도움을 받는 가능성도 매우 낮고 외부 지원체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2) 노동시장과 배제

모자가족 여성가구주는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로서의 위치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이중적 존재규정에 의하여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살고 있는 모자가족가구주에게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가장으로서의 필수 생계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내 성차별 구조의 모순을 그대로 답보하게 된다(Fraser and Gordon, 1994; Smith, 1986; Stoltz, 1997). 성분절화에 의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등 집중)와 저임금, 일교·시간제·용역직과 같은 비정규적인 노동으로의 집중, 낮은 지위의 직종으로의 집중 등은 저소득모자가구의 여성가구주의 임금이나 소득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의 수입에 의해서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90% 이상이며 주로 생산직 37.4%, 서비스직 31.0%, 농림어업직 16.9%, 판매직 13.0%로 종사상의 지위는 전체의 2/3이 피고용자이며 나머지 1/3은 영세자영업자중사자로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비공식부문에 의존하고 있다(김영란, 1998; 유정원, 2000). 또한 M자형 구조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여성들이 자녀양육기간동안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와 있다가 이혼, 사별, 배우자 가출 등으로 재취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개 이들은 근로이전 및 임금 등에 대한 조건적 고려를 하기보다는 일단 취업을 통해 생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향취업도 수용해야 하는 현실이다(김경희, 1993; 정미숙, 2001; 이혜

1)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하여 신여성과 살림을 차려도, 남편과 사별하였을 경우에도, 본 부인은 여전히 시집식구였으며, 자녀들도 시집식구의 공동책임하에 놓여 왔다(김경애, 1999).

경·최은영, 1997; Amott, 1988). 이것은 노동시장내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저소득 모자가구주는 생계유지를 위해 저임금, 차별, 불안정고용을 감수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중년층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단려있어서 한번 일자리를 잃을 경우 다시 취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여성가구주는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저임금 구조에 매우 취약한 집단이 되고 있다.

모자가족 가구주는 노동자로서의 존재 이외에 어머니로서의 위치에 의해 구조적 제약에 놓인다. 보육시설의 미비, 보육시간대의 제한 등은 여성가구주의 취업생활에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저소득모자가정 여성가구주는 정규직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기보다는 어머니 역할과 노동자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직종으로 취업을 제한하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게 된다(장혜경 외, 2001). 수많은 저소득모자가구주는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내노동이나 파트타임 서비스 및 판매직, 식당, 파출부 등 임금이나 노동조건 자체보다는 여성가구주의 두 가지 역할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취업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자녀양육비용이나 교육비용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을 이용해 이중 혹은 삼중의 직업(dual or triple job)을 하는 경우도 많다(김수현, 2001; Amott, 1988; Baker and Tippin, 1999). 결국 저소득층 모자가구는 노동시장으로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이중, 삼중의 직업유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자녀들은 교육이나 인적자원 개발에서 다른 가구의 아동들에 비하여 떨어지고 이로 인해 세대가 빈곤이 재생산되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의 성별 계층화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는 모자가구주가 일한다는 것만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하는 노동자와 어머니로서의 이중적 존재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연대의식과 통합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성가구주는 일하지만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형적인 노동빈민(working poor)이 될 수밖에 없다.

(3) 사회복지정책과 배제

저소득모자가구는 남성노동자, 특히 정규직(fulltime) 남성노동자를 전제로 한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배제를 경험한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인노동, 그것도 가능한 한 지속적인 취업 노동에 기반한 기여금 적립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어서, 장기간의 실업 기간의 증가, 보험혜택이 적용되지 못하는 고용관계(영세사업장 취업, 비정규직 고용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김미원, 1995). 즉 사적영역이나 공적영역에서든 노동을 했는가 여부가 아니라 기여금 액수와 기여금 납부기간에 비례하여 급부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속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내에서 취약한 노동자는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도 사회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모자가구주는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존재하는 제반의 성차별과 어머니와 노동자라는 이중적 존재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시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혼이나 사별 이후 대부분의 저소득층 여성가구주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지원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고용보험의 수급권 발생은 일정이상 기간의 고용기간과 실업을 조건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소득모자가구의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 남성가장의 수급권을 전제로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보험자격은 가족구조의 변동이후 모자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저소득모자가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수급권이 유일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적용률이 약 50% 정도 밖에 이르지 않았고 최소 10년 이상의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될 수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유족연금수급권은 사별가구로 한정된 혜택이어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배우자 유기, 가출, 미혼모 등으로 인한 모자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전혀 없는 현실이다.²⁾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정책적으로 남성의 피부양자로서(아내, 딸, 과부로서), 아니면 가계수입의 보조자 혹은 저임금노동자로서 취급되는 노동시장구조와 이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는 여성가구주의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주요기제중의 하나이다.

저소득모자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모자복지법에서 제공하는 공공부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저소득모자가구가 경험하는 전반적인 빈곤이나 배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극소수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최후의, 최소한의 보호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³⁾ 이처럼 저소득모자가구에 대한 최후의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근거에는 '실패한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은 마치 열등처우의 원칙과 같이 이들이 '훌륭한 가정주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김미원, 1995).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잔여주의적 복지국가의 대표격인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비효율한 수준의 모자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수급자격에 대한 뜨거운 논쟁(deserving poor vs undeserving poor) 속에서도 AFDC(1996년 이후 TANF로 변화) 제도하에서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와 의료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미국의 모자가구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모자가구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에 한정된 복지급여만을 제공받으며 아동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노동에 대한 어떤 경제적 보상급부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가구가 갖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사회보장제도는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 가구의 경제적 빈곤을 더욱 강화시키고 재생산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toltz, 1997).

- 2) 연금분할수급권은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한 이혼여성에게 주는 연금이지만, 수급권자가 60세 이상일 때에는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이혼한 당시에는 경제적 급부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시켰다.
- 3) 2000년 현재 전체 모자가구(904,000 가구) 중에서 공공부조 지원을 받는 가구는 56,125세대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모자가구의 약 6%에 불과한 실정이다(통계청, 2000; 보건복지부, 2000). 지원내용이 있어서도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지원이 전부인 실정으로 아동양육비의 경우 1인당 일일 541원(분유80g)에 그치고 있어 과연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법적으로는 이외에도 복지자금 융자나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우선입주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수혜비율은 법정저소득모자가구 전체의 0.3%에 불과하여, 저소득 모자가구를 위한 공공부조는 극소수를 대상으로 한 상당한 제한적인 급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사업안내』를 참조할 것.

(4) 사회적 편견과 배제

그동안 저소득모자가구는 우울감 증대, 불안,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감, 자존감 상실 등 여러 형태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란, 1998; 이숙진 외, 2001). 그런데 이와 같은 저소득모자가구의 정서적, 심리적 갈등은 가족구조의 변화이후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 이중역할의 고충, 자원망 체계의 약화에 의한 전반적인 생활의 어려움 이외에도 사회일반으로부터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 일반의 모자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은 오히려 이들 가구구성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불러일으켜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제한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축소시키는 전반적인 위축을 통하여 사회통합의 통로를 제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사회에서 복지수급을 둘러싼 모자가구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사회여론은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Murray, 1984; Wilson, 1987). 미국의 AFDC를 수급받는 저소득층 모자가구는 끊임없이 가족관계를 쉽게 파괴하며, 게으르고 나태하며, 책임감 없는 집안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낙인의 주요대상이 되어 왔다. 월슨(1987)이 여성가구주가 증가하는 원인을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역설한 뒤에도, 이들에게 주어진 복지어머니(welfare mother)라는 사회적 오명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흡리스와 같은 미국사회의 대표적인 하층계급(underclass)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혼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사회적으로 명칭되는 '편모가구'나 '편모슬하' 등에는 정상을 벗어난 비정상성이나 가족으로서의 결핍 등 상당히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5) 기타-주거와 건강

저소득모자가구가 겪게 되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 중의 하나가 기본적인 주거문제이다. 저소득 모자가구는 이혼이나 사별이전에도 사회전체적 집값 인상과 전세비용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니,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주거안정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김수현, 2001; 박영란, 1998; Paugam, 1995). 저소득모자가구주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한다하더라도 이들의 수입은 생활하고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거의 대부분 쓰여지기 때문에,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에 의해 살아가는 저소득모자가구의 경우 전세나 월세비 증가는 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1989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방안이나, 수혜범위가 상당히 제한되고 노인이나 장애인 우선으로 편제되고 있어서 저소득모자가구를 위한 주거안정책이 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건강은 저소득 모자가구의 자활이나 취업 등을 저해하는 원인임과 동시에 사회적 배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저소득모자가구의 건강문제가 다른 가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건강보험에의 접근통로 차단,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및 시간적 부담문제, 부실한 영양 및 위생관리, 이중역할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갈등 등이 복합되어 있다(Aday, Andersen, and Flering,

1980 : Whelan and Whelan, 1995). 취업지위상 주변화된 노동자계층일수록,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의해서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가족일수록 더 많은 전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 되는 바와 같이, 건강은 건강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이 총체적으로 결합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계층별, 가족 경제상황별 만성신체질환 유병률

	중산층	비주변화된 근로계층	주변화된 근로계층
생계가 곤란한 경우	14	23	23
그렇지 않은 경우	8	14	16

자료 : Whelan, 1992, 1994; Whelan & Whelan, 1995에서 재인용.

3) 저소득모자가족에 대한 국내외 지원정책 현황과 빈곤을 실태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사는 모자가족의 빈곤문제는 198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 여러 나라에서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모자가족이 된다는 것이 모두 경제적으로 빈곤에 노출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범주화되는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은 국가별 차이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적 기초, 가족정책의 지향성,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에 의하여 결정된다(〈표 3〉 참조). 전형적으로 잔여주의적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하여 가족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미국은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적인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하고 있다. 반면 보편주의 정책 기초 위에 개별 개인부양자 모델에 기초하여 가족정책을 전개해 가고 있는 스웨덴은 모자가족에 대해서도 보다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결과 미국과 스웨덴 모자가족의 빈곤율은 그 절대적인 크기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를 데리고 사는 일반가족과의 비교에서도 상당히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모(부)자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현황 및 빈곤율 실태

	미 국	영 국	스 웨 덴
사회복지 정책방향	잔여주의적 복지정책	혼합적 복지정책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가족정책 지향성	남성 = 생계부양자, 여성 = 양육책임자 방향 속에서 가족정책 전개	남성 = 생계부양자, 여성 = 양육책임자 방향 속에서 가족정책 전개	여성, 남성에 관계없이 개별독립 주체로 생활은 한다는 전제하에 가족정책 전개
모(부)자가족 지원정책	자산조사 기초하여 빈곤모자가구에 제한된 TANF 지급. 진세 모자가구를 위한 모성연금이나 아동수당은 없음	아동수당, 소득보조수당, 모자가족을 위한 추가 급여 등이 제공되었으나, 최근 근로를 통한 자활이나 남성을 통한 사적지원을 강조	모자가족의 급여는 사회보험급여에 의해 제공되며 전채 한 부모 가족에게 아동수당, 부모보험 혜택 제공
모(부)지 비율	27%(1998년)	22%(1996년)	18%(1993년)
일반 vs 모(부)자 빈곤율	22% vs 53%	17% vs 56%	2% vs 3%

자료 : Baker and Tippin(1999), Miller(1996)에서 재구성함.

3. 저소득모자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배제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1)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연구문제

본 연구의 자료는 2000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차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저소득모자가정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 「사회복지욕구조사」는 2000년 10월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주를 대상으로 지역의 복지만족도와 다양한 복지 욕구를 측정한 광범위한 조사로 각 구·군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층화표집 방식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중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반시민 데이터'와 최저생계비 기준선 이하의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경우인 '저소득층 데이터'를 통합(merge)시킨 후, 가구유형별 특성에 따라 일반(남성가장) 가구, 일반모자가구, 생계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모자가구로 재유형화시켰다. 본 연구는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일반가구 2,508가구, 일반모자가구 235가구, 저소득모자가구 433가구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가구 유형별 생활실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 ANOVA 등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자료는 SAS 6.1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구유형을 일반가구, 일반모자가구, 저소득모자가구⁴⁾로 세분화하고 비교분석하는 방

식을 취한 이유는 우선 남성가상을 중심으로 한 일반가구에 비해 모자가구가 경제적 수준이나 생활 실태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떨어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일반모자가구와 저소득모자가구를 따로 구분한 이유는 이들 가구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다. 가구유형별 특성과 생활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모자가구의 사회적 배제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가구, 일반모자가구, 저소득모자가구별로 고용, 소득분포, 주택소유방식, 가구 소비생활을 비교하여 연속선상에 놓인 사회적 배제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각 가구별로 경제직 위기가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가구별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추가적 보호 요구를 살펴보고 모자가족내의 가족구조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가구유형별로 사회적 지원체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2) 가구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일반가구 39.01세, 일반모자가구 37.34세, 저소득모자가구 47.99세로 저소득모자가구주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일반가구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가구와 일반모자가구간에는 그다지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비하여 변형저소득모자가구의 학력은 무학 13.24%, 초졸 27.90%, 중졸 24.82% 등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도 일반가구와 일반모자가구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분포이지만, 일반모자가구의 임시직 고용비율(9.86%)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모자가구는 무직(65.69%) 비율이 높았으며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용직(14.71%)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저소득모자가구의 무직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자격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모자가구는 일반모자나 저소득가구에 관계없이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일반가구의 약 70%는 자가, 25%는 전세로 주거가 비교적 안정된 편인 반면 일반모자가구는 52.14%가 자가, 32.48%가 전세로 되어 있어서 일반가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법정저소득모자가구는 자가소유나 전세의 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월세(23.86%)나 영구임대, 무상임대 등 주거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Youseef와 Helder는 여성가구주를 정의함에 있어 법률상(De Jure)의 가구주와 사실상(De factor)의 가구주로 나누고 있다. '법률상 여성가구주'는 현재 남성배우자가 없는 미혼모, 이혼 및 사별 여성, 별거여성, 남편으로부터 유기된 여성, 남성배우자가 있으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사실상 여성가구주'는 남편이 기약없이 떠난 경우, 배우자가 현존하나 실업, 장애, 질병 등으로 경제적 기여가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사업에서는 이들에게 통상 '저소득모자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법률상 가구주 및 사실상 가구주를 거의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중의 하나인 (법정)저소득모자가구는 법률상 및 사실상 가구주를 포함하는 반면, 다른 대상인 일반모자가구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상 남성가장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적 차원의 여성가구주인 경우(특히 이혼 및 사별, 남편으로부터 유기된 여성, 미혼모 등)에 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4〉 가구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내 용	일반가구 (N=2,508)	일반모자가구 (N=235)	법정저소득모자가구 (N=433)
연령***	평균연령(std)	39.01(10.61)	37.34(11.67)	47.99(13.37)
학력분포***	무학	24(0.97)	10(4.27)	56(13.24)
	초졸	117(4.71)	15(6.41)	118(27.90)
	중졸	246(9.90)	14(5.98)	105(24.82)
	고졸	1308(52.66)	128(54.70)	129(30.50)
	전문대졸	303(12.20)	35(14.96)	6(1.42)
	대졸이상	448(18.04)	30(12.82)	9(2.13)
	대학원졸 이상	38(1.53)	2(0.85)	0(0.0)
고용형태***	상용직	769(33.22)	75(32.21)	20(4.99)
	임시직	106(4.58)	21(9.86)	22(5.49)
	일용직	101(4.36)	6(2.82)	59(14.71)
	자영업	833(35.98)	58(27.23)	16(3.99)
	무직	0(0.00)	0(0.00)	263(65.69)
	기타	506(21.86)	53(24.88)	21(5.24)
	주거형태***	자기	1656(66.94)	122(52.14)
전세		621(25.10)	76(32.48)	85(21.14)
월세		137(5.54)	16(6.84)	116(28.86)
영구임대		11(0.44)	8(3.42)	84(20.90)
무상임대		12(0.49)	6(2.56)	34(8.46)
무허가		3(0.12)	0(0.00)	4(1.00)
기타		34(1.37)	6(2.56)	12(2.99)

***p<0.001

2) 저소득모자가족의 생활실태 및 현황

(1) 경제적 어려움

가구소득을 보면 일반모자가구가 일반남성가장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저소득모자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736,827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표 5〉 참조).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반모자가구의 40%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군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수의 일반모자가구가 모자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지만 현재 빈곤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표 5> 가구소득 분포

(단위:%)

	일반가구 (N=2,413)	일반모자가구 (N=224)		법정저소득모자가구 (N=421)
없다	0.00	0.00	없다	47.17
100만원 미만	14.13	39.29	10만원이하	4.72
100-150만원	27.89	26.79	10-20만원	5.19
151-200만원	23.66	16.52	20-30만원	8.96
201-250만원	13.92	9.18	30-40만원	10.38
251-300만원	10.03	3.13	40-50만원	10.14
301-350만원	4.85	1.34	50-60만원	6.84
351-400만원	2.40	0.89	60-70만원	3.54
401만원 이상	3.11	2.68	70만원이상	3.07

***p<0.001(일반가구 대 일반모자가구)

가구의 생활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의 지출항목을 질문한 결과, 일반가구는 교육비 비중이 월등히 높고 식비, 임차보증금 순이었으며, 일반모자가구는 식비 비중이 가장 높고 교육비와 임차보증금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법정저소득모자가구는 교육비, 식비,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다고 응답한 가구가 각각 약 20%대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공공요금에도 14%가 응답하였다. 한편 교육비를 얼마나 지출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반가구는 대부분 21만원에서 40만원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반모자, 저소득모자가구는 전혀 사교육비를 쓰지 못하거나 10만원 이하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것은 일반가구에 비해 일반모자, 저소득모자가구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자녀교육비 등과 같은 미래형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가구 지출항목 우선순위(%)

(단위: %)

	일반가구 (N=2,446)	일반모자가구 (N=230)	법정저소득모자가구 (N=420)
식비	29.80	37.39	21.90
의료비	6.01	7.83	12.14
교육비	45.83	27.83	22.62
임차보증금 (전/월세)	13.78	20.43	20.00
연료비	4.58	6.52	7.38
공공요금	0.00	0.00	13.57
기타	0.00	0.00	2.38

***p<0.001

(2) 경제위기이후 생활 변화와 불투명한 미래전망

1997년 경제위기는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실업, 임금인하, 불안정고용의 증가로 현실적으로 많은 가족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이후 가족의 생활형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질문한 결과,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약 60%의 응답자가 생활형편이 나빠진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7〉 참조). 그러나 생활형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가구는 생활형편이 '매우 좋아졌다', '좋아진 편이다'에 각각 0.48%, 7.98%가 응답하였으며 일반모자가구도 약 7%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반면 거의 대부분의 저소득가구는 달라진 바 없거나 더 나빠진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외환위기가 가구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쳤음을 말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전반적인 경제 위기가 상황에 생활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외환위기 이후 하위 20% 소득은 110% 이상 하락한 반면 상위 20%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득감소 없이 오히려 약 3-6% 증가되었다는 정진화(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전체적으로 생활형편이 나빠진 이유로는 일반가구가 실직이나 사업실패, 기타 요인을 한 반면, 일반모자가구와 저소득모자가구는 생활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질환이나 장애를 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각각 12.03%, 28.87%), 이외에도 이혼을 경제형편이 어려워진 이유로 들고 있어 외환 위기 이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높아진 가족해체가 이들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년 이후 생활전망도 일반가구의 미래 전망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모자가구는 일반가구 보다 앞으로 생활이 달라지지 않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경향성을 보인다(〈표 7〉 참조). 일반가구의 60%, 일반모자가구의 52%가 5년 후 생활수준에 대해 다소 혹은 매우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일반모자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생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 포인트 높았다. 반면 저소득모자가구는 미래가 현재보다 나쁘거나(22.02%) 비슷하다(48.01%)고 보는 경향성이 뚜렷하다.

〈표 7〉 외환위기 이후 생활형편과 미래전망

단위: 명(%)

		일반가구	일반모자가구	법정저소득모자가구
IMF 이후 생활변화***	매우 좋아졌다	12(0.48)	0(0.00)	0(0.00)
	다소 좋아졌다	198(7.98)	15(6.41)	3(0.69)
	변화하지않았다	789(31.80)	76(32.48)	183(42.07)
	다소 나빠졌다	996(40.15)	99(42.31)	176(40.46)
	크게 나빠졌다	486(19.59)	44(18.80)	73(16.78)
5년후 생활 기대감***	매우 좋아질 것이다	152(6.12)	10(4.33)	1(0.23)
	다소 좋아질 것이다	1327(53.42)	111(48.05)	127(29.74)
	그대로일 것이다	650(26.17)	74(32.03)	205(48.01)
	다소 나빠질 것이다	281(11.31)	29(12.55)	71(16.63)
	매우 나빠질 것이다	74(2.98)	7(3.03)	23(5.39)

***p<0.001

(3) 제한된 가족지원과 가족구성원 보호부담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정도를 알아본 결과, 일반가구가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일반모자가구, 저소득모자가구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일반가구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질 경우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약 70%, 일반모자가구는 약 60%, 저소득모자가구는 약 37%이었다. 한편 지원을 받을 곳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저소득모자가구가 21.25%로, 저소득층은 현실적으로 난관에 부딪혔을 경우 가족이나 친지, 친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소득모자가구 중에는 동사무소로부터의 지원을 받는다는 가구가 28.18%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부조를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저소득층 모자가구에서 나타나는 제한된 가족지원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실직이나 사고, 장애를 겪게 될 경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다.

<표 8>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로 의존하는 지원망

단위: 명(%)

	일반가구	일반모자가구	법정저소득모자가구
양가부모	653(27.25)	32(14.48)	47(10.85)
자녀	140(5.84)	13(5.88)	42(9.70)
형제자매	851(35.52)	89(40.27)	75(17.32)
이웃, 친구	279(11.64)	28(12.67)	29(6.70)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52(2.17)	4(1.81)	6(1.39)
동사무소(사회복지공무원)	42(1.75)	14(6.33)	122(28.18)
종교단체(복사, 신부, 스님)	80(3.34)	9(4.07)	11(2.54)
없다	266(11.10)	28(12.67)	92(21.25)
기타	33(1.38)	4(1.87)	9(2.08)

***p<0.001

이외에도 가구별로 가족원 보호 요구가 차이가 나는데, 일반가구에 비해 일반모자가구, 저소득모자가구가 더 많은 가족원 보호부담을 안고 있었다(<표 9> 참조). 증가된 가족원 보호는 우선 가구주의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줄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 문제, 가족내 역할 갈등 등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 왔다. 모자가구는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가구에 비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전업주부의 부제로 이들 가족원을 보호해야 하는 일은 이중적 전곡에 빠질 수밖에 없다.

노인보호요구는 예상과는 달리 일반가구보다는 일반모자가구나 법정저소득모자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혼이나 사별을 한 후 혼자 살면서 친정 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서 이들을 돌봐야 할 필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모자가구나 저소득모자가구의 노인보호 부담은 일반가구에 비해 약 10%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보호요구는 저소득모자가구에서 현저히 높은 비율(25%)로 나

타났으며, 일반가구나 일반모자가구에서도 8-9% 정도의 보호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저소득모자가구는 장애인을 이유로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가구의 높은 장애인 보호요구는 이들을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성질환자 보호요구도 저소득모자가구에서 현저히 높은 비율(약 45%)로 나타났으며, 일반모자가구도 12% 정도의 보호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소득모자가구는 장애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현재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표 9〉 가족내 추가보호요구

단위: 명(%)

보호내용	분류	일반가구	일반모자가구	법정저소득모자가구
노인***	없다	1844(73.67)	155(66.22)	318(72.77)
	1명	478(19.10)	71(30.47)	109(24.94)
	2명 이상	181(7.23)	7(3.00)	10(2.29)
장애사***	없다	2321(92.52)	212(90.21)	30(75.51)
	1명	180(7.20)	21(8.94)	102(23.11)
	2명 이상	7(0.28)	2(0.85)	6(1.37)
만성질환자***	없다	2287(91.48)	209(88.94)	242(55.02)
	1명	170(6.80)	24(10.21)	176(40.18)
	2명 이상	43(1.72)	2(0.85)	21(4.79)

***p<0.001

(4) 사회안전망에의 불안정한 포섭

사회복지제도에의 접근정도를 알아본 결과, 일반모자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사회보험 가입률은 떨어지고 있었으며, 지역사회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가장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일반모자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일반가구에 비해 약 10% 포인트 떨어지고 있었으며, 고용보험도 가입정도가 낮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은, 법정저소득모자가구의 이용경험률이 14.58% 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가구(8.71%), 일반모자가구(5.56%) 순이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시설이 여전히 정부로부터 공공부조를 받는 절대빈곤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일반 지역주민들은 사회복지서비스나 교육프로그램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일반모자가구는 미흡한 가족적 지원, 추가적 가족 보호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외에도 현재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에 불안정하게 포함되어 향후 노후의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혜경, 1996).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통

합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표 10〉 사회복지제도 접근도

(단위: %)

	일반가구	일반모자가구	법정저소득모자가구
국민연금 가입률***	75.39	66.67	-
고용보험 가입률	34.36	30.00	-
사회복지관 이용도**	8.71	5.56	14.58

p<0.01, *p<0.001

주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일반가구-일반모자가구간 교차분석 결과임. 법정모자가구는 연금이나 보험에 해당되지 않음.

5. 결론 및 제언

근래에 들어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18세 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살아가는 모자가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가구의 빈곤율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을 데리고 살고 있는 모자가구의 빈곤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이다. 그런 데 주요 복지 의존(welfare dependency) 논쟁의 한가운데에 언제나 모자가족이 있어 왔던 것처럼, 이들 모자가족의 빈곤에 대해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집단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사회적 비난이나 낙인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Millar, 1996; Amott, 1990; Baker & Tippin, 1999; Fraser & Gordon, 1994). 그러나 모자가족에 대한 실태연구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저소득모자가구주의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노동빈민(working poor)이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하였으며 저소득모자가구의 빈곤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구조 속에서 이들 가구가 노동시장, 사회복지정책, 가족지원체계 등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것에 의한 것임을 제시하고 이의 극복방안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연대모색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저소득모자가구의 사회적 배제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한 일반가구, 18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사는 모자가구, 현재 법정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모자가구의 전반적 경제상황, 가족지원, 사회적 지원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모자가구는 일반모자가구, 저소득모자가구에 상관없이 일반가구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저소득모자가구는 일반가구, 일반모자가구에 비해 연령, 학력 등과 같은 인적자본이 취약하였으며, 고용형태, 주거형태, 소득, 가구지출 전반에 걸쳐 상당히 취약한 계층임을 드러냈다. 반면 일반모자가구는 연령, 학력 등에서는 일반가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임시직 등과 같은 불안정 고용형태, 선·월세에 심중된 주거형태, 낮은 소득, 제한된 교육비 지출 등 가계생활 전반에 걸쳐 일반가구보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반모자가구는 법정저소득층으로 분류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예상치 않은 가구내 변동이 발생하면(예를 들면 자녀 및 가구주의 질환, 실직, 전/월세 폭등 등)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집단으로 배제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모자가구가 1997년 외환위기가후 생활형편의 변화는 물론 향후 5년 이후 생활전망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거나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위기에 취약하며 장기적인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현실을 보여준다.

둘째, 일반모자가구나 저소득모자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남성배우자 부재로 인한 가족구조의 취약성과 함께 원가족 및 친지로부터의 지원은 상당히 제한된 반면 아동 이외에도 노인, 장애자, 만성질환자와 같은 가족원을 보호해야 할 부담은 상당히 높아서 이들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저소득모자가구는 장애나 만성질환을 겪는 가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이 빈곤하게 된 원인으로서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들 가구의 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반모자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정규직 상용노동자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기본구조 때문에 유사시 사회로부터 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되어 있었으며, 국민층을 중심으로 편재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법정저소득모자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일반모자가구는 이중적인 복지구조에 의해 이중적으로 불안정하게 걸쳐진 집단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복지제도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모자가구는 현재 정부에 의한 지원을 받는 빈곤층에 포함되어 있건 홀로 자립을 하고 있건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이들 모자가정 가구주가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전적으로 취약한 인적자본 때문이 아니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한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와 이에 기반한 사회복지정책, 이혼/사별/별거 이후 더욱 취약해진 가족지원체계, 추가된 가족원보호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모자가구의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빈곤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배제의 총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살고 있는 모자가구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이들을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대부분 빈곤자에 대한 소득이전정책만이 강조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모자가구의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실업 혹은 취업에 의한 것을 넘어선다. 따라서 모자가구를 포함한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층이 사회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소득이전정책만이 아닌 다원적 서비스체계가 결합되어야 하며 경제적 공평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소외, 사회적 단절, 정치적인 무력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박병현 외, 2001: 심창학, 2001; Jordan, 1997; Silver, 1994). 국가는 고용안정은 물론, 주택, 의료, 보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못할 경우 모자가구와 같이 제반 여건에 있어 취약한 집단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toltz, 1997).

둘째, 아동양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동양육 책임이 개별가구의 몫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분담은 소수의 절대빈곤층에만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모자가구는 이혼, 사별, 별거이후 생계유지 이외에도 아동양육 및 교육비를 혼자서 부담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데, 아동양육 및 교육이 전적으로 기구주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저소득모자가구의 아동이 제한된 교육을 받게 되어 장기적으로 빈곤이 세대간 재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부, 출생지역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목적과도 위배된다. 전세계적으로 모자가족 증가함에 따라 아동부양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의 예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Baker and Tippin, 1999; Millar, 1996). 이것은 여성과 아동의 빈곤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아동세대의 부양을 통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유지시키고 장려하기 위해서다.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지위 및 제반 여건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도입되어야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모자가족의 아동을 위한 양육 및 교육수당을 현실화하도록 해야겠다.

셋째, 모자가구를 위한 장단기적 의료보장체계의 확립과 주거보장에 대한 지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부조제도는 의료접근에의 불평등해소와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의 혜택범위는 절대빈곤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대다수의 모자가구는 제외되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사별이나 이혼은 급작스런 가족구조의 변화 이외에도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적 혜택을 동시에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단기적 지원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자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노인, 장애인, 질환자와 같이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족원들이 많이 있는바, 의료비 부담과 보호역할로 인한 취업제한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막는 주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또한 모자가구의 여성가장들은 가족의 분화과정에서 겪은 정신적인 고통과 생계유지 및 자녀양육의 이중역할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많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건강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주거보장도 대다수 모자가구의 생활을 위협하는 주요문제이다. 모자가구에 있어 질병이나 상해에 의한 의료비 부담의 과도화나 전세값 인상 등은 실직 이상의 위력으로 이들 가구를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로 연결된다. 따라서 모자가구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장단기적 의료보장제도나 주거안정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과도기적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 이혼, 사별, 별거 직후 모자가구에게 긴급생계급여나 긴급의료급여 등과 같은 급여를 제공하는 조항의 신설도 고려할 수 있다(윤홍식, 2003).

넷째, 18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살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모자복지법이 새로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자가구는 크게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복지적 혜택을 받고 있으나, 모자복지법 대상자는 의료보호 부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급자격과 이로 인한 취업제한이라는 갈등상황에 놓여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사는 여성가구주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이 주어진다면 다른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 비하여 학력이나 신체적 능력 측면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살고 있는 3·40대의 여성가구주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잔여주요적 생활보호를 넘어서 아동양육과 의료보호에 대한 지원을 담은 새로운 모자복지법 체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인력개발을 모색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모자가구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와 이에 기반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고려가 전면적으로 있어야 하겠다. 1980년대 이래 줄곧 모자가구의 빈곤이 증가한 이유는 성차별적 노동시장,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 와 이로 인한 가족구조의 불안정 증가, 기본적으로 전일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편제된 사회보험제도, 가족내에서 보살핌을 담당하고 있는 모자가구주들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한 사회복지정책의 실패 등에서 기인한다(김미운, 1995; 김영란, 1997; Amott, 1988; Pearce, 1978; Smith, 1986).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1997년-1999년 3년간 빈곤율을 추적한 유정원 연구(2000)에 의하면, 남성가구주 빈곤율은 경제 회복속도나 변동률에 기초하여 변화를 보이는데 비하여 여성가구주 빈곤율(1999년 남성 17.8%, 여성 39.6%)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이혼이나 사별, 배우사유기 등으로 형성된 모자가족에 대한 사회구조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모자가족을 중심으로 한 빈곤화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모자가구가 경제적 빈곤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적 배제와 연관된 가족구조, 노동시장, 사회복지정책 등 성차별적 각종 제도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모자가구 여성자신은 물론 여성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 적극적인 실천활동을 통한 참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자가구의 빈곤문제에 주목하고 이를 사회적 배제 개념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가구유형별 비교분석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모자가구의 사회적 배제 과정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였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제까지 모자가구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 빈곤 실태와 현황에 집중되어 왔으며 비교집단의 부재로 인하여 이들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처했는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층화표집에 기초하여 표본을 추출한 원자료를 바탕으로 일반가구, 일반모자가구, 저소득모자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분석하면서 학력, 고용형태, 주거문제, 가족지원체계, 가족보호요구, 사회복지제도로의 접근성에 있어서 모자가구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음을 부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이차분석 방식(secondary data analysis)의 한계로 인하여 모자가구의 빈곤화 과정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풍부한 내용분석에는 제한을 받았다. 사회적 배제에서 주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사회적 편견, 정치적 세력 부재 등은 자료의 부족으로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특정지역에 기반한 연구결과이므로 이것을 사회 일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동일시점에서 세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cross-sectional comparative study)을 취했으나, 향후 사회적 배제과정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단 혹은 개인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한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체 모자가구의 빈곤화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통찰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경애. 1999.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시시망에 관한 연구". 『동덕여성연구』, 제4호: 7-32.
- 김경희. 1998. 『저소득 실직 여성가장의 여성복지 강화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 김미원. 1995.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제26호: 51-75.
- 김수현. 2001. 『저소득여성가구주 자활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영란. 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제31호:1-28.
- 류정순. 2000. "빈곤의 규모 추정과 빈곤가구의 생활실태". 김동춘 외 공저. 『IMF 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 pp. 145-195.
- 박경숙·박능후.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사활 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 박능후. 1999.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효과성". 『1999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8-28.
- 박병현·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 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제45호: 185-219.
- 박영란. 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성정현·송나영·정미숙·한정원·김진. 2001. "새판이혼 사례를 통해 본 자녀양육비 지원실태와 대안". 『사회복지연구』, 제 18호: 29-58.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제44호: 178-208.
- 유성원. 2000. 『한국여성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제 4,5,6차 대우 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진·정경아. 2001. 『인천 저소득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인천개발연구원.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01. 『인천시민의 복지만족도 및 욕구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 정건화. 2000. "외환위기 이후 도시가구의 생활상태 변화: 도시가계조사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김동춘외 공저. 『IMF 이후 한국의 빈곤』, 나남, pp. 109-143.
- 장혜경·송다영·김영란·김정훈. 2001.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 정미숙. 2001. "여성가구주, 성별화된 빈곤, 그리고 일: 어머니나 노동자냐". 『경제화 사회』, 제51호.
- 윤홍식. 2003.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제53호: 51-73.
- 이혜경. 1996. "사회복지 관련법과 여성: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 이혜경·최은영. 1997. "한국 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 『연세사회복지연구』, 제4집: 142-185.
- Açay, L., R. Andersen, and G. Fleming. 1980. *Health Care in the U.S.: Equitable for Whom?* Sage Publications.
- Arnott, T. 1988. "Working for less: single mothers in the workplace." in *Women As Single Parents*, edited by E. Mulroy, Auburn House.
- Arnott, T. 1990. "Black women and AFDC: Making entitlement out of necessity." in *Women, the State and Welfare*, edited by L. Gordo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Baker, M., and D. Tippin. 1999. *Poverty, Social Assistance, and the Employability of Mothers: Restructuring Welfare State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erghman, J. 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pp. 10-28, in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Policy Press.
- Fraser, N., and L. Gordon. 1994. "A genealogy of dependency: tracing a keyword of the U.S. welfare states," *Sings* (winter).
- Jordan, B. 1997. *A Theory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Cambridge: Polity Press.
- MacPherson, S. 1997. "So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Policy* 26(4): 533-541.
- Millar, J. 1996. "Mothers, workers, and w:ves: comparing policy approaches to supporting lone mothers." in *Good Enough Mothering?* edited by E. Silva, Routledge.
- Murray, C. 1984. *Losing Ground: American Social Policy, 1950-1980*. New York:Russell Sage Foundation.
- Northrop, E. 1990. "The feminization of poverty: the demographic factor an the composition of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Issues* 24(1).
- Paugam, S. 1995. "The spiral of precariousnes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process of social disqualification in France." pp. 49-79, in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Policy Press.
- Pearce, D. 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 Room, G., R. Lawson, and L. Frank. 1989. "New poverty in the European community." *Policy and Politics* 17(2): 165-176.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531-578.
- Smith, J. 1986. "The paradox of women's poverty: Wage-earning women and economic transformation," in *Women and Poverty*, edited by Novak, C. and M. Stob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oltz, R. 1997. "Single mothers and the dilemmas of universal social policies." *Journal of Social Policy* 26(4): 425-433.
- Teachman, J., and K. Paasch, 1994. "Financial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e Future of Children* 4: 63-83.
- Whelan, B., and C. Whelan. 1995. "In what sense is poverty multidimensional?" pp. 29-48, in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Policy Press.
- Wilson, W.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 Study of Developing Comprehensive Policies for Low-Income Single-parent Households - Using a Concept of Social Exclusion

Song, Dayoung

(Assistant Professor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The study starts from the critical thought on why most of female-headed single-parent families are under poverty regardless of their hard working. The study is to explore the lives of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as working poor and to develop comprehensive policies for them out of poverty and other social vulnerability, using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which has been broadly introduced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Specifically, the study aims to analyse the process of social exclusion of low-income single-parent households, by comparing the differential lives in the economic, social, political aspects among male-headed dual-parent household, female-headed single-parent household, and poor female-headed lone-parent household who is under the public poverty line. The study was based on the secondary data analysis. A total of 3182 samples(the first 2508, the second 235, and the third 439) were included. Using SAS 6.12, frequency, chi-square, means, and ANOVA were utiliz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single mothers, on the whole, are vulnerable population in terms of employment, housing stability and income. Also, low-income households of single mothers are more negatively affected by the IMF economic crisis and carry more pessimism on their future. In comparison with male-headed households, single mothers have fewer support from social insurance as well as family resources and higher burdens of additional caring need for the old, the disabled, and the chronically ill. These findings identify the reality in which female-headed households with dependent children are exposed to the overall social vulnerability and thus are easily trapped into the social disadvantaged. Finally, the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policies and counter-measurements for low-income female-headed families to be the primary member in our society.

Key words : Single-parent Households, Social Exclusion, Poverty, Female-headed Families, Social Safety Net

[접수일 2003.6.13 게재확정일 2003.7.15]